

영풍의
독단적 이사회 운영 **견제**와
주주환원율 **제고**, 경영투명성 **확보**에
주주님의 한표가 큰 힘이 됩니다!



영풍의 지속가능경영은 가능할까?

1. 조업정지

- 최근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2025년 2월 26일부터 2025년 4월 24일까지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부과된 데 이어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추가로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 등 경영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2. 안전사고

- 1997년 이래 사망자 15명을 포함한 재해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2023년 12월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하여 영풍의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구속 기소되기 까지 하였습니다.

3. 과징금 부과

- 2025년 2월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영풍이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영풍의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 약 280억원을 부과한 환경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계속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및 이로 인한 소송, 과징금 부과로 기업가치와 평판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영풍의 지속가능경영은 가능할까?

4. 환경관련 총당부채

-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 사업장 부지 내에 장기간 적치된 자로사이트케이크 (아연을 생산하고 남은 최종 산업 폐기물)를 2025년까지 전량 외부반출 및 처리하는 조건으로 조업을 허가하였습니다.

- 2025년 말까지 인허가 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의 추가적인 조치 및 이에 따른 자원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영풍은 위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2024년 3분기말 현재 투입될 비용 606.7억원을 반출총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봉화군은 석포제련소 공장부지 및 주변 토지에 대해 토양정밀조사 실시, 수차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행정처분 부과

- 이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위해 토지정화에 투입될 비용도 토양정화 총당부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토지정화총당 부채는 2024년 3분기말 현재 총당금 잔액이 1,359.7억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을 부과받았습니다

- 지하수 정화 총당부채 및 복구 총당부채는 273억원에 달합니다.

총당금 규모
2,000억원 이상

영풍의 지속가능경영은 가능할까?

5. 무능하면서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경영진

- 앞서 지적인 환경·노동·안전 문제와 관리능력 부재를 포함한 영풍 경영진의 경영능력 부재는 이미 낙인이 찍힌 바 있습니다.

- 설비투자에 소극적이고, 제련업 경쟁력 상실과 함께 3년 연속 영업손실(별도 기준) 등 최악의 경영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2015년 주당 150만원을 상회하던 주가는 2025년 2월말 기준 42만원까지 하락하여 70% 이상 폭락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같은 잘못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무지인지 무모함인지 궁금합니다.

- 영풍의 현재 사외이사 3인은 영풍의 운영·경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감시·감독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박병욱 사외이사는 장형진 고문의 대학동문으로 3년 전 선임 당시에도 의결권자문사로부터 독립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 받았던 인물이며,
- 최창원 사외이사는 2023년부터 영업적자 전환 및 2024년 당기순손실 1,217억으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코리아씨키트 사외이사입니다.
- 박정욱 사외이사는 KBS 방송연출가이자 KBS교향악단 사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영풍의 사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영풍은 과연 현재 사외이사 3명의 재선임 요청을 할까요? YES

위기의식부재

MBK파트너스와 경영협력계약은 잘 이루어진 걸까요?

1. 계약의 주요내용

- 고려아연의 이사 선임을 위하여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서도 상호 협조
- MBK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고려아연 이사의 수 1인이 더 많도록 하고, MBK측이 지명한 자를 고려아연의 대표이사(CEO) 및 재무담당책임
임원(CFO)로 선임, (주)영풍은 이에 협조
- 기존 주주(영풍 측)는 10년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 금지, 10년 경과한 이후 MBK측에 우선매수권 부여
- MBK측은 기존주주(영풍 측)에 대하여 콜옵션을 보유함
 - **MBK측의 콜옵션 행사기간** :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고려아연 임원진 확보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 **콜옵션 행사 대상주식** :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 현재, MBK측과 영풍 측이 소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그 '50%+1'주에 해당하는 주식수에서 MBK측이 소유한 주식 수를 차감하여 산출되는 나머지 주식
 - **콜옵션 행사사유** : MBK측은 제3자에게 주식을 처분하게 됨으로써 콜옵션을 전량 행사하더라도 그 결과 보유하게 될 주식 수가 기존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될 주식 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또는 경영협력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콜옵션 행사 가능

영풍의 경영진은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2. 기울어진 계약으로 보이는데, 영풍은 목적이 따로 있는 건지? 순진한 건지 의문?

- MBK측은 고려아연 이사를 영풍보다 1명 더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영풍과의 관계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가지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려아연의 대표이사 및 재무담당책임임원(CFO)에 대한 선임 권한도 보유합니다.
- 영풍에 대해서는 10년간 주식을 처분금지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고 10년 이후에는 MBK측이 영풍 보유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만일 해외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고려아연 주식을 매각하면서 영풍측이 소유한 주식까지 함께 매각(완전한 기업 매각) 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도 MBK측에 옵션 대상주식과 옵션가격의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다든지,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하는 등 영풍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계약 내용이 많아서, 혹시라도 영풍의 오염물질, 폐기물 처리 등 환경 문제를 포함한 영풍 내부에 산적한 경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MBK측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MBK-영풍 콜옵션' 살피는 금감원, 어떻게 계약됐길래

콜옵션, MBK에 유리하게 설정 시 영풍에 손해 불가피... 배임 의혹 제기

금융당국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조사에 나선다.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둘러싼 불공정거래를 살피는 한편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콜옵션 계약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과 영풍·MBK 공개매수 가격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시세조종에 해당해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MBK파트너스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입니다.

1. MBK의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에서의 경험이 많은 MBK는 부진한 실적과 내부관리 부실로 정신이 없는
알짜 관계사를 둔 영풍을 상대로 성공적인 계약을 이끌어 냅니다.

콜옵션 계약 조건에 성공한 MBK가 손실보전에 대한 대가도 없이 은행도 아닌 증권사로부터 조단위로
대출 받아서, 경영권 싸움에 의해 천정부지로 급등한 주식을 추격 매수한다는 것은 MBK답지 않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2025년 3월 초에 신청된 걸 보면, 이미 2024년 말부터 어려움을 감지했을 MBK
로서는

금번 달의 손실보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장치를 마련했을 거란 의구심은 당연합니다.

2. 주주보호가 우선입니다.

영풍과 그 주주들의 보호를 위해 MBK-영풍 간 콜옵션 계약을 포함한 진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관계 당국도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수익률 제고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추격매수 전략을 취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성명 (명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동일*	취득/처분 방법	주식등의 종류	변동 내역			취득/처분 단가**
					변동전	증감	변동후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1월 28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456,486	12,855	1,469,341	1,134,218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1월 29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469,341	8,180	1,477,521	1,187,415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2월 02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477,521	15,975	1,493,496	1,447,090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2월 03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493,496	5,200	1,498,696	1,509,835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2월 04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498,696	4,050	1,502,746	1,657,759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2월 06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502,746	10,000	1,512,746	1,942,594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2월 09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512,746	5,950	1,518,696	1,572,723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2월 10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518,696	19,400	1,538,096	1,572,472
주식회사 한 국기업투자 당스	825-86-03185	2024년 12월 11일	장내매수(+)	의결권있는 주식	1,538,096	14,555	1,552,651	1,440,798

2024년 12월 19일 MBK측 지분공시 발췌

주주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영풍의 경영활동



주주를 무시하고 주총 없이 이사회 결의로 3조 9천억원의 자산을 현물출자했습니다.

1. 주식회사의 자산은 주주의 자산인 것은 중학생도 아는 사실입니다

주식회사의 중요한 재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가치는 3조9천억원, 즉 4조원에 육박합니다.

영풍 총자산의 70%가 넘고, 자기자본(순자산) 대비 90%가 넘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3년 연속 영업손실, 환경문제, 안전문제, 관리부실과 MBK와의 불리한 계약을 이 끌어낸, 관련업계에 대한 지식도 없이 학연 등으로 이어진 이사님들이 모여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현 물출자를 승인하신 주주님 계십니까?

2. 확실히 따집시다.

일례로 남의 돈을 가져가 돈을 불렀다고 해서 가져간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해당 주식가치는 영풍의 주주에게 현물배당을 한다면 1주당 고려아연 주식 약 3주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주당 2~3백만원 상당으로 주주가치에 심각한 훼손을 끼치는 사건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	고려아연(주)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박기덕
		자본금(원)	104,542,940,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주)	20,703,283	주요사업	비철금속 제련업
2. 양도내역	양도주식수(주)	5,262,450			
	양도금액(원)(A)	3,926,529,705,450			
	총자산(원)(B)	5,568,116,970,055			
	총자산대비(%) (A/B)	70.52			
	자기자본(원)(C)	4,282,768,794,784			
	자기자본대비(%) (A/C)	91.68			
3. 양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00		
4. 양도목적		신규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5. 양도예정일자		2025년 03월 07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유한회사 와이피씨			
	자본금(원)	4,385,375,000			
	주요사업	지주사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강촌로 139번길 9 (성곡동)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7. 거래대금지급		신설법인의 설립시 지분으로 수취(주당 발행가 4,476,846원)			

2025년 3월 10일 영풍 공시 발체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로서, 더 이상 영풍의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평판이 훼손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1년부터 계속되는 영업손실에 이어 2025년 역시 조업정지의 영향으로 경영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크며,
주주 환원 역시 최근 5개년 기준 회사의 현금배당수익률이 연평균 1.7% 수준으로 동종업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영풍은 높은 유보율에도 불구하고, 투자나 고용에 인색할 뿐 아니라 주주 보호 및 주주의 이익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실체가 의심스러운 외부 자본과 결탁하여 정작 불리한 경영협력계약이란 것을 체결하는가 하면,
회사 총 자산의 70%가 넘는 재산을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이사/사외이사 5명이 모여서 신설법인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이사, 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최대주주 일가의 거수기로서 존재한다면, 정상화의 길은 요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은 논란 많고 능력이 의심되는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재선임 해달라고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영풍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영풍정밀의 주주제안

현물배당 도입

- 영풍의 배당성향은 1.7% 수준
- 최근 주당 50원 현금배당 결정
(시가배당을 0.01% 이하임)
- 유보율을 40,000% 이상 방치
- 주주환원을 위해서는 현물배당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

- 영풍은 논란 많은 사외이사 3명 재선임안 정기주총 상정함
- **보다 능력있는 경영진으로 교체하여야** 영풍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집중투표를 통해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할 이사를 선출할 기회가 커집니다.

감사위원 선임

- 제 역할 못하는 감사위원이나 능력 없는 경영진이 추천한 후보를 선임해서도 안됩니다.
- 독립성과 감독 능력이 뛰어난 후보자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영풍 이사회에 대한 견제 및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건 설명(현물배당 도입)

현물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제2-2호 의안)

- 현재 영풍 정관 제 42조 1항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9년~2023년까지 주당 1만원 정도 현금배당을 하고 있지만, 동종업계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평균 배당성향은 1.71%에 불과합니다.
- 그나마 2024년 현금배당은 주당 50원으로 생색 내기에도 모자란 실정입니다. (시가배당을 0.01% 이하)
- 영풍의 방만한 경영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배당 확대만을 요구하는 것은 회사의 주인인 주주로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영풍은 다수의 영풍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내에 유보율 40,000%를 쌓아두고 주주들에게 인색한 경영진에게 현물로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개정 안건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결요청
제42조(이익배당) 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중략)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42조(이익배당) 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은 ~(중략)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 ③ (좌동)	현물배당 도입 (주주제안)	○ 찬성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일부 변경 (제2-4호 의안)

- 영풍의 이사진 하면 떠오르는 것은 조업정지, 안전사고, 과징금부과, 환경문제, 주주 무관심, MBK파트너스와의 불리한 계약 체결 등 긍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임원진에게 영풍의 정상화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는 최대주주가 지분율만 믿고 제멋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주주를 무시하고 방만한 경영을 해왔던 결과입니다
- 최대주주란 주식 100%를 소유한 것이 아닌, 주주 중에서 주식을 많이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갖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다 표를 얻은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 절대적 최대주주가 지배하는 소유구조에서 무시될 수 있는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최근 소액주주들 및 시장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일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의결요청
제28조(임원수와 선임방법) ① ~ ② (생략) ③ 본회사는 ①항의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임원수와 선임방법) ① ~ ② (좌동) ③ (삭제)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제안)	○ 찬성

안전 설명(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울 선임(제 4-2호 의안)

- 최근 영풍에 불거진 일련의 사태를 보면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주식회사에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업무 감사(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
- **보고요구 및 조사 권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관여, 부정 행위 보고~(생략) 등이 있습니다.**

- 굳이 감사의 역할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감사위원의 중요성과 그 동안 역할에 충실했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영풍은 업무능력과 관리능력도 검증이 안된 이사 5명이 모여서 회사자산의 70%가 넘는 고려아연 주식 약 4조원 어치를 주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제멋대로 처분했습니다. 또한, 더 이상 MBK파트너스와의 불공정한 계약체결 같은 의사결정은 없어야 합니다.

- 최근 화두인 ESG경영까지 바라는 것은 영풍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최소한 안팎으로 이렇게 시끄럽고 환경당국/지자체 등으로부터 불법사항 회복 이행조치에 대한 압박과 조업 중단까지도 추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고, 대비하지 못했던 이사들을 대거 재선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가뜰이나 주주환원정책에 관심 없는 영풍의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안건 설명(감사위원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울 선임(제 4-2호 의안)

- 영풍 오너일가 및 현 경영진과 분리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외부 감사위원 선출이 필수적입니다
- 주주의 힘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되도록 견제해야 합니다
- 영풍의 이사회가 추천한 전영준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했던 일반주주가 주주제안을 취소하는 등 목소리를 낼 명분이 사라져, 영풍의 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 반면 김경울 회계사는 영풍이 직면한 거버넌스 개선, 리스크 관리, 기업가치 회복 등 정상화에 책임자일 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역량이 검증된 후보자입니다.
- 물론 영풍 경영진은 부진한 실적, 관리능력 등을 감추고 싶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인물을 선임하고 싶겠지만, 감사위원은 경영진에게 소액주주를 대신하여 쓴 소리도 할 수 있고, 회사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지향하는 김경울 후보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성명 (직업)	경력		영풍과의 거래	의결요청 (김경울)	의결요청 (전영준)
김경울 미래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2003~현재 2019 2025~현재	미래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 (주)후이즈 감사	없음	○ 찬성	X 반대